

1. 개정 이유

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근거규정 및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18214호, 2021. 6. 8. 공포, 2021. 12. 9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기준(안 제19조의2 신설)

- 1)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

나.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, 소방시설 확인요청(안 제26조의2,3 신설)

- 1)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
- 2) 제공기관이 소방시설 관련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

다.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의 평가(안 제29조 신설)

- 1) 이용자 만족도 및 제공기관 평가 방법, 그 결과에 대한 공개 방

법 등 절차를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, 제26조의2, 제26조의3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 (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기준 및 내용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주간·방과후 활동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26조의2 (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) ①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6과 같다.

②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

14호 서식의 주간활동서비스(방과후활동서비스) 제공기관 지정(변경)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사업실적,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,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정관포함) 사본,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(회칙·규약 등 포함) 사본 중 택 1부
4. 기타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거나, 기존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제 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1.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
2. 해당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
3.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별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
⑥ 법 제29조의2 제3항 및 제37조 제3항에 따른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.

제26조의3 (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) ①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게 그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.

제29조(평가)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.

1.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
2. 이용자의 개별 욕구에 맞춘 활동계획 및 지원

3.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 운영 체계, 제
공인력 등에 대한 적정성 및 관리

4. 그 밖에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를 위
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주간·방과후활
동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
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현장평가, 서면평가,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
가를 실시하고,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제공기관의
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, 시기 등 기타
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

1. 시설 기준

가.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

- 1)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,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,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

나. 시설의 구조 및 설비

- 1) 제공기관의 내·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, 보건·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
- 2)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
- 3) 활동공간이란 급여제공시간 동안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용하는 공간으로, 이용자 1명당 3.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(제공기관 내 다른 프로그램실과 겸용 및 시간대별로 활용 가능)
- 4)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

다. 소방시설 등

- 1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기준(노유자시설)에 따라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

2. 인력 기준

가. 배치기준 및 수행업무

- 1) 시설장(관리책임자):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,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, 시설 및 직원 관리,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등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할 것
- 2) 전담 관리인력: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, 프로그램 계획·조정·연계,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,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·사무 업무 등을 수행할 것
- 3) 제공인력: 기관당 1인 이상, 1개 그룹당 제공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, 제공인력은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,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,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

나. 자격기준

- 1) 시설장(관리책임자)의 자격기준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 - 가)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
 - 나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
- 다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
 - 라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
 - 마)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바)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2)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의 자격기준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. 다만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가)~사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
- 가) ‘사회복지사업법’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 - 나) ‘초·중등교육법’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 2급) 및 준교사
 - 다) ‘장애인복지법’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
 - 라) ‘장애인복지법’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 - 마) ‘국민체육진흥법’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
 - 바) ‘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’ 시행규칙 제8조(및 별표 1)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
 - 사) ‘평생교육법’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
 - 아) 가)부터 사)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관련된 기술·기능 자격 소유자 및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 - 자) 기타 이에 준하는 자
- 3) 전담 관리인력이나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제공인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3.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기준 : 구성 및 내용

- 1)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으로 구성할 것
- 2)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, 당사자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할 것
- 3)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금지함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2 (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기준 및 내용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주간·방과후 활동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2 (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) ① 법 제29조의2 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6과 같다.</u> <u>②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</u>

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
별지 제14호 서식의 주간활동서
비스(방과후활동서비스) 제공기
관 지정(변경) 신청서에 다음
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
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
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
2. 사업실적, 시설 및 인력기준
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
류

3.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, 법
인 등기사항 증명서(정관포
함) 사본, 비영리민간 단체 등
록증(회칙·규약 등 포함) 사
본 중 택 1부

4. 기타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
류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
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
는 5인 이상의 주간활동서비스
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

지정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거나, 기존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제 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

2. 해당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

3.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별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⑥ 법 제29조의2 제3항 및 제37조 제3항에 따른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.

제26조의3 (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) ①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주간·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

<신 설>

에도 제1항을 따른다.

제29조(평가)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.

1.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

2. 이용자의 개별 욕구에 맞춘 활동계획 및 지원

3.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 운영체계, 제공인력 등에 대한 적정성 및 관리

4. 그 밖에 주간활동서비스·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현장 평가, 서면평가,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제공기관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, 시기 등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